PRUGIO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마속지모 안한 부적은 청약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은 2016.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6.29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머지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건설법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일반공급 청약을 받으려는 자는 청약통장 보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셔야 부적격청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본인사항(청약자 적요 인정주택)에 "투주택기간 보장주택"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이 적용주택의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100%를 기정세대로 적용하여 공급하고, 가점제 산정기준에는 추첨제로 진행하여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은 계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되니다. 이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일반공급 청약을 받으려는 자는 청약통장 보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 투주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이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투주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격요건 자격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세대구성원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부양무주택 요건 경우 해당자도 포함됨 (세대주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대상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요건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부양무주택 요건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무주택 이력 포함 (세대원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속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상 등재하고 있는 경우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이 배우자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의 무주택 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해당 사도 거주기간(청약지역)	20	• 공급대상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자 기준이며, 도시 및 군 편입지역도 기존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도 로 봄.
입주자 저축 기한기간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지역의 기한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기한기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청약일 기준으로 봄.
	6	10년 이상

(참고)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 확인해 줄 때에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 확인해 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 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 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